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요청

= 지난 제20대 국회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 재연 우려, 국회의장에 입장 전달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ktolleh tv 273번 | t-broad 205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라 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여야 같은 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 규정이 더해져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원 구성은 국회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획정위 위원 구성 당시 정당이 사실상 대부분의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되어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현행 규정은 선거구 획정안 의결에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려워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도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 획정안 제출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획정위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방식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20대 국선 직후인 2016년 6월 23일 확정위의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확정위가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사무일정 》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 2018. 10. 15.(월)까지
- 선거구 획정안 국회의장에게 제출 : 2019. 3. 15.(금)까지
- 국회의원지역구 확정(국회) : 2019. 4. 15.(월)까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 2020. 4. 15.(수)

붙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16. 6. 23.제출)

[붙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6. 6. 23. 국회 제출)**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강화**

####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변경(§ 24)**

##### **현 행**

-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함 (§24④).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보받은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24③).

##### **개정의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제안 이유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음.
-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을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에 예속되어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구 분	위원정수	추천권자	근거법률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11명 이내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 추천	공직선거법
중앙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11명 이내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1명  공영방송 추천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 법조계·시민단체 추천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9명 이내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포함	공직선거법

[주요 국가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방식]

국 가	인 원	위 원 구 성 방 식
영 국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원의장</li> <li>▪ 고등법원 판사</li> <li>▪ 내무장관 및 환경교통장관 지명 각 1명</li> </ul>
독 일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장</li> <li>▪ 행정재판소 판사 1명</li> <li>▪ 선거위원회위원장이나 내무부장관 등 지방정부 공무원 5명</li> </ul>
프랑스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 임명 각 1명</li> <li>▪ 최고행정법원, 최고법원, 회계법원의 법관 중 각 1명</li> </ul>
호 주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관위 위원</li> <li>▪ 해당 주의 선거관·고위선거관리관</li> <li>▪ 해당 주의 토지측량청장</li> <li>▪ 해당 주의 총감사관</li> </ul>
캐나다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사 1명</li> <li>▪ 하원의장 임명 2명</li> </ul>
일 본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수, 변호사 등 총리가 임명</li> </ul>

##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의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 24)

### 현 행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24①).

※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 없음.

### 개정 의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함.

### 제 안 이 유

- 선거구획정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함에 있어 특별의결정족수를 요구하여 높은 수준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선거구획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려워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선거구획정안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여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